



‘장애 인식개선 교육’ 모니터링 및 운영교재 개발연구 결과발표회

| 일시 | 2019. 12. 9.(월) 14:00~16:30

|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 별관 11층





‘장애 인식개선 교육’ 모니터링 및 운영교재 개발연구 결과발표회

| 일시 | 2019. 12. 9.(월) 14:00~16:30

|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 별관 11층



국가인권위원회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프로그램

○ 일시 : 2019. 12. 9.(월) 14:00~16:30

○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 별관 11층

시 간	주 제	발표자
14:00 ~14:10 (10분)	개회	사회 : 권혁장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기획과장
14:10 ~15:00 (50분)	발표1 ... '장애 인식개선 교육' 모니터링 및 운영교재 개발 연구 결과 발표(종합) ※ 참여자 조사 결과 분석 포함	이동석 대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발표2 ... 교육 현황 분석	윤삼호 장애인가카데미 인식개선교육센터소장
	발표3 ... 교육담당자, 강사 조사 결과 분석 / 운영교재	이호선 꼬닥꼬닥협동조합 연구원
15:00 ~15:50 (50분)	토론1 ... 개선방안에 대한 법적 검토	최정규 경기장애인우권익문제 연구소장, 변호사
	토론2 ... 개선방안 및 운영교재 현장 적용 방안	한서경 서울시장애인 복지정책과 장애인권익보장팀장
	토론3 ... 장애인권증진 측면에서 검토	이용석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정책실장
	토론4 ... 보건복지부 정책 반영 및 향후 대책	신용호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장
	토론5 ... 한국장애인개발원 정책 반영 및 향후 대책	박지연 한국장애인개발원 미래 전략부 장애인식개선팀장
15:50 ~16:20 (30분)	질의응답	진행 : 권혁장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기획과장
16:20 ~16:30 (10분)	폐회	

목 차

■ 연구 발표

1. ‘장애 인식개선 교육’ 모니터링 및 운영교재 개발연구 결과(종합)	9
※ 참여자 조사 결과 분석 포함	
이동석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2. 교육 현황 분석	18
_윤삼호 (장애인아카데미 인식개선교육센터 소장)	
3. 교육담당자, 강사 조사 결과 분석 / 운영교재	35
_이호선 (교단교단협동조합 연구원)	

■ 토론

1. 개선방안에 대한 법적 검토	47
_최정규 (경기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장, 변호사)	
2. 개선방안 및 운영교재 현장 적용 방안	50
_한서경 (서울시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권익보장팀장)	
3. 장애인권증진 측면에서 검토	55
_이용석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정책실장)	
4. 보건복지부 정책 반영 및 향후 대책	62
_신용호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장)	
5. 한국장애인개발원 정책 반영 및 향후 대책	64
_박지연 (한국장애인개발원 미래전략부 장애인식개선팀장)	

연구 발표

• 발표 1 •

‘장애 인식개선 교육’ 모니터링 및 운영교재 개발연구 결과(종합)

※ 참여자 조사 결과 분석 포함

이동석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발표 2 •

교육 현황 분석

윤삼호 (장애인이카데미 인식개선교육센터 소장)

• 발표 3 •

교육담당자, 강사 조사 결과 분석 / 운영교재

이호선 (교과교과협동조합 연구원)



발표 1

‘장애 인식개선 교육’ 모니터링 및 운영교재 개발연구 결과(종합)

※ 참여자 조사 결과 분석 포함

이동석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발간등록번호
11-1620000-000743-01
2019년도 인권교육
연구용역보고서

‘장애 인식개선 교육’ 모니터링 및 운영교재 개발연구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



연구수행기관 대구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책임자 이동석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연구원 이호선 (꼬닥꼬닥협동조합 연구원)
박광옥 (성공회대학교 외래교수)
문삼호 (장애인인카데미 인식개선교육센터 소장)
연구보조원 우미정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석사과정)

1. 연구 필요성

- 지속적인 장애인에 대한 차별
 - 장애인 중 34.8%는 장애 때문에 본인이 차별받고 있다고 느끼고 있음
 - 장애인의 79.9%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아직도 우리 사회에 존재한다고 느끼고 있음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
- UN 장애인권리협약 제8조
 - 가족 단위를 포함하여 사회 전반에서 장애인에 관한 인식을 향상시키고 장애인의 권리와 존엄성에 대한 존중심 고취
 - 성별과 연령을 기반으로 하는 것을 포함하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장애인에 대한 고정관념, 편견 그리고 유해한 관행 근절
 - 장애인의 능력과 이들이 기여한 바에 대한 인식 증진

1. 연구 필요성

- 2015년 ‘장애인복지법’ 개정, 2016년 7월부터 의무교육 시행
- 교육 대상

교육대상 구분	교육대상 기관
국가기관	입법기관, 사법기관,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각 시·도에 속한 시·군·구청, 읍·면·동사무소,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자·출연된 기관
공공기관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등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경영하거나 법인을 설립하여 경영하는 지방공기업
특수법인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영유아보육법」에 의해 설치된 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법인·단체 등 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부모협동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의해 설치된 학교	국립유치원, 공립유치원, 사립유치원
「초·중등교육법」에 의해 설치된 학교	초등학교, 중등학교, 고등학교,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고등교육법」에 의해 설치된 학교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통신대학 등 원격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

1. 연구 필요성

- 교육 내용
 - 장애의 정의, 장애인의 인권과 관련된 법과 제도, 장애인의 행동특성 및 능력, 장애인과 의사소통하는 방법, 장애인 보조기구 및 장애인편의시설, 그 밖에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내용
- 교육 방법
 - 1년에 1회 이상 실시
 - 집합 교육 또는 인터넷 강의 등을 활용한 원격 교육, 체험교육 등
- 실적보고
 - 2017년부터 장애 인식개선 교육 실적관리시스템 오픈
 - 장애 인식개선 교육 실적관리 시스템: <https://www.able-edu.or.kr>
 - 교육 실시 후 30일 이내에 장애 인식개선 교육 결과보고를 작성, 게시

1. 연구 필요성

- 장애 인식개선 교육이 의무화되었음에도 아직까지 양적, 질적으로 미비한 실정
 - 형식적인 보여주기식 교육
 - 교육내용이 변화하는 장애의 개념과 장애인권리협약의 제정취지와 목적 등을 반영하지 못함
 - 법률 소개, 장애인을 대하는 에티켓, 차별 시 처벌조항 등 위주로 실질적인 장애 인식개선을 이루기에는 한계가 있는 등 교육 내용의 문제 존재
 - 장애에 대한 이해가 없는 강사들이 다른 의무교육과 함께 진행함으로써 장애 인식개선 교육의 질을 떨어뜨림
 - 대규모 집합교육 등으로 인해 교육 효과가 떨어지는 등 교육 방법의 문제 발생
- 이와 같은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이에 따른 개선방안을 마련하여야 앞으로 이 제도가 지속 가능할 것
 - 올해는 장애 인식개선 교육이 의무화된 지 3년이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의무교육 대상기관의 교육 실시 현황을 조사하여 현재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이를 기반으로 교육을 운영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 개발 필요

2. 연구 내용과 방법

연구 내용	연구 방법
• 장애 인식개선 교육 집행 현황 분석	• 한국장애인개발원 자료 분석
• 현재 문제점 파악	• 기존 문헌 검토 • 중요도-성취도 조사(IPA)(교육 대상자(공무원)) • 초점집단인터뷰(FGI) 실시(교육 담당자, 강사)
• 교육기관 용 운영교재(가이드라인 핸드북) 개발	• 다른 교육 관련 운영 교재 참조하여 개발

3. 장애 인식개선 교육 중요도-성취도 분석

- 중요도-성취도 분석(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
 - IPA분석은 조사 참여자가 평가한 중요도와 만족도 결과를 기반으로 향후 강화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영역을 제시하는데 용이한 방법
 - IPA분석은 조사 참여자가 응답한 중요도와 만족도 값을 사분면의 매트릭스에 배치하여 중요도와 만족도 수준에 따라 유지하고 개선해야 할 사항들을 파악할 수 있음
 - I분면은 중요도와 만족도가 모두 높은 요인으로 향후 유지·강화해야 하는 영역
 - II분면은 다른 요인들에 비해 중요도는 낮지만 만족도가 높게 나타난 요인들로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할 필요 있음
 - III분면은 중요도와 만족도 모두 다른 분면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요인으로 향후 다른 요인들보다 점진적인 개선을 필요로 함
 - IV분면은 중요도는 높는데 만족도가 낮은 부분들로 다른 요인들보다 중점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부분임

3. 장애 인식개선 교육 중요도-성취도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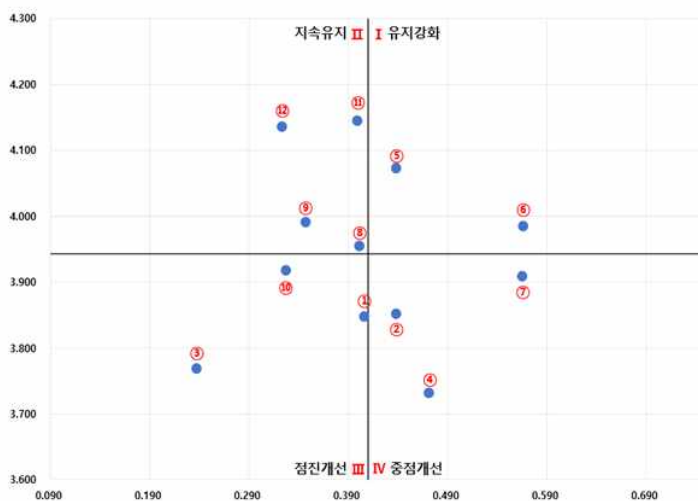
- 중요도-성취도 분석(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
 - IPA분석을 위해 관련 문헌 고찰을 통해 장애 인식개선 교육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세부 요인 도출

번호	세부 요인	조작적 정의
1	교육 일정	교육 일정은 교육생의 업무 일정을 고려하여 계획되어야 한다.
2	교육시간	교육시간은 교육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어야 한다.
3	사전 교육 안내	사전에 교육에 대한 충분한 안내가 있어야 한다.
4	교육생의 평가 반영	교육생의 평가 내용이 다음 진행될 교육에 반영되어야 한다.
5	교육 장소	교육 장소는 쾌적하고 교육생의 편의를 고려한 곳이어야 한다.
6	교육 기자재	교육 시 교육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기자재가 활용되어야 한다.
7	교육 인원	적절한 교육 인원을 대상으로 교육이 진행되어야 한다.
8	교육내용	교육내용은 교육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세부 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9	교육형태	교육 형태(집합, 원격교육 등)는 교육생 수준, 교육내용 등에 적합해야 한다.
10	교육 진행방식	교육 진행 방식(강의, 토의, 체험 등)은 교육생 수준, 교육내용 등에 적합해야 한다.
11	강사 전문성	강사는 장애 분야의 지식과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12	강사 전달력	강사는 교육생의 수준을 고려하여 교육내용을 쉽게 전달해야 한다.

3. 장애 인식개선 교육 중요도-성취도 분석

- 중요도-성취도 분석(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
 - 각 요인들에 대한 중요도와 만족도, 그리고 구체적인 현황 및 욕구를 파악할 수 있는 설문지 개발
 - 최소 1회 이상 교육에 참여한 국가기관, 시도 및 시군구 공무원, 공공기관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실시
 - 설문조사는 2019년 7월 29일부터 9월 5일까지 이메일 조사로 진행
 - 총 354부의 자료 수집
 - 이 중 자료 오류와 불성실한 응답 자료 16부를 제외한 총 338부가 분석 자료로 활용
 - 분석방법은 응답자의 교육 참여 현황 및 욕구를 분석하기 위해 SPSS 21.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 및 기술통계, 교차분석, 집단별 평균 분석 등 실시. 그리고 Deng(2007)의 수정 IPA분석방법을 활용하여 세부 요인별 우선순위와 주요 성과 및 개선 영역 도출

3. 장애 인식개선 교육 중요도-성취도 분석



- ①: 교육일정,
- ②: 교육시간,
- ③: 사전 교육 안내,
- ④: 교육생의 평가 반영,
- ⑤: 교육장소,
- ⑥: 교육기자재,
- ⑦: 교육인원,
- ⑧: 교육내용,
- ⑨: 교육형태,
- ⑩: 교육 진행방식,
- ⑪: 강사 전문성,
- ⑫: 강사 전달력

3. 장애 인식개선 교육 중요도-성취도 분석

번호	세부 요인		상대적 중요도	만족도	IPA매트릭스	
					사분면	영역
1	교육 일정	교육 일정은 교육생의 업무 일정을 고려하여 계획되어야 한다.	.406	3.848	Ⅲ	점진개선
2	교육시간	교육시간은 교육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어야 한다.	.438	3.852	Ⅳ	중점개선
3	사전 교육안내	사전에 교육에 대한 충분한 안내가 있어야 한다.	.237	3.769	Ⅲ	점진개선
4	교육생의 평가반영	교육생의 평가 내용이 다음 진행될 교육에 반영되어야 한다.	.471	3.732	Ⅳ	중점개선
5	교육 장소	교육 장소는 쾌적하고 교육생의 편의를 고려한 곳이어야 한다.	.438	4.073	I	유지강화
6	교육 기자재	교육 시 교육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기자재가 활용되어야 한다.	.566	3.985	I	유지강화

3. 장애 인식개선 교육 중요도-성취도 분석

번호	세부 요인		상대적 중요도	만족도	IPA매트릭스	
					사분면	영역
7	교육인원	적절한 교육 인원을 대상으로 교육이 진행되어야 한다.	.565	3.909	Ⅳ	중점개선
8	교육내용	교육내용은 교육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세부 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401	3.955	Ⅱ	지속유지
9	교육형태	교육 형태(집합, 원격 교육 등)는 교육생 수준, 교육내용 등에 적합해야 한다.	.347	3.991	Ⅱ	지속유지
10	교육 진행방식	교육 진행 방식(강의, 토의, 체험 등)은 교육생 수준, 교육내용 등에 적합해야 한다.	.327	3.918	Ⅲ	점진개선
11	강사 전문성	강사는 장애 분야의 지식과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399	4.145	Ⅱ	지속유지
12	강사 전달력	강사는 교육생의 수준을 고려하여 교육내용을 쉽게 전달해야 한다.	.323	4.136	Ⅱ	지속유지

3. 장애 인식개선 교육 중요도-성취도 분석

- 합의
 - 장애 인식개선 교육은 장애 인식개선을 위해 꼭 필요한 교육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향후 교육 확대 필요 및 가능
 - 장애 인식개선 교육을 진행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물리적·인적 교육 환경이 갖춰진 것으로 평가되었음
 - 교육의 내용이 장애를 기반으로 하지만, 이를 통해 인간 존엄성과 가치, 인간의 다양성, 동등한 사회구성원, 사회통합 등에 대한 의식을 가질 수 있는 방향으로 내용 구성 필요
 - 원활한 교육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교육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필요
 - 참여자의 이해수준을 고려한 단계적이고 포괄적인 교육 내용 편성 필요
 - 집합 교육의 형태와 참여자의 경험과 소통에 기반한 참여형 진행 방식 강화 필요
 - 장애 인식개선 교육에 대한 상시 교육 체계 마련 필요

4. 장애 인식개선 교육 개선 방안 - 제도적 측면

- 장애 인식개선 교육 의무 이행 강제화
 - ✓ 미실시에 따른 과태료 부과 체계 마련
 - ✓ 공공기관의 '경영실적평가제도' 및 지자체 '합동평가지표' 등 각종 평가지표에 장애 인식개선 교육 실시 여부 포함
 - ✓ 실적 공표 제도 마련 및 구체적인 실적 평가 방안 마련
- 장애 인식개선 교육 교육시간 최저 기준 설정
 - ✓ '1년에 1회 이상, 1회 1시간 이상 실시'
- 교육 내용 개정
 - ✓ 장애가 갖는 차이에 대한 존중, 장애인의 인정, 장애아동의 점진적 발전능력 및 정체성 유지 권리에 대한 존중, 신체적 및 정신적 완전함을 존중받을 권리, 공동체 의식 형성 등 추가
- 교육방법 중 외부강사에 의한 집합교육 최저 기준 설정 및 체험교육 삭제
- 교육보고 사항에 의무교육 대상 인원 포함

4. 장애 인식개선 교육 개선 방안 - 실천적 측면

- 교육 목표의 수립
 - ✓ 장애 인식개선 교육의 목표는 장애인의 권리와 존엄성에 대한 존중심 고취, 장애인의 능력과 사회적 기여에 대한 인식증진,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 제거,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권리보장 증진,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를 위한 통합사회(inclusive society) 조성 등이 있을 수 있음
 - ✓ 따라서 이와 같은 목표를 명확히 하면서 이와 같은 목표를 이루기 위해 어떤 교육 내용과 교육 방법을 실행할 것인지에 대해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교육 전 홍보 강화
- 교육 내용의 난이도 조정
- 다양한 교육 방법 활용
- 소규모 교육 진행 및 교육 운영 횟수 증대
- 교육 담당자가 참고할 수 있는 「교육 실시기관용 운영교재(핸드북)」 개발, 보급
-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강사역량 강화 지원

감사합니다.

발간등록번호
11-1625000-000743-01

2019년도 인권교육
연구총액보고서

‘장애 인식개선 교육’ 모니터링 및
운영교재 개발연구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



발표 2

교육 현황 분석

윤삼호 (장애인가카데미 인식개선교육센터 소장)

장애인식개선 의무교육 현황 및 분석

윤삼호 (장애인아카데미 인식개선교육센터 소장)

1. 교육 현황 및 평가

(1) 국가기관

〈표 1〉 국가기관의 분류

구분		소속 기관
중앙행정기관	18부	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5처	법제처, 국가보훈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인사혁신처, 대통령경호처
	17청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검찰청, 병무청, 방위사업청, 경찰청, 소방청, 문화재청, 농촌진흥청, 산림청, 특허청, 기상청, 새만금개발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해양경찰청
독립기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국가인권위원회

① 대통령 산하 기관

〈표 2〉 대통령 산하 기관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적보고 현황

(단위: 명)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계
대통령실	-	-	-	-
국가정보원	-	-	-	-
감사원	-	-	485	485
방송통신위원회	102	-	187	289
계	102	0	672	774

- 전체적으로 교육이 확대되었지만 2017년에는 교육 실적이 전무한 상태이다.
- 대통령실과 국가정보원은 지난 3년 동안 인식개선 교육 실적이 전혀 없고, 방송통신위원회는 2017년에 교육 실적이 없다.

② 국무총리 산하 기관

〈표 3〉 국무총리 산하 기관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적보고 현황

(단위: 명)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계
국무조정실/총리비서실	425	860	450	1,735
국가보훈처	-	21	4,828	4,849
인사혁신처	-	567	-	567
법제처	55	101	86	242
식품의약품안전처	-	1,067	2,883	3,950
공정거래위원회	-	-	267	267
금융위원회	20	-	341	361
국민권익위원회	-	-	-	0
원자력안전위원회	-	-	46	46
계	2,516	4,633	10,873	11,971

- 전체적으로 교육이 꾸준히 확대되고 있다.
- 하지만 국민권익위는 지난 3년 동안 교육 실적이 전무하고, 원자력안전위는 2018년 처음 교육을 실시하였으나 참여 인원은 46명으로 매우 저조하다.

③ 각부

〈표 4〉 각부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적보고 현황

(단위: 명)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계
기획재정부	본청	-	-	1,287	1,287
	국세청	-	-	17,071	17,071
	관세청	-	-	3,266	3,266
	조달청	718	1,007	-	1,725
	통계청	379	1,996	3,069	5,444
	소계	1,097	3,003	24,693	28,793
교육부	본청	24,685	24,445	17,185	66,31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본청	-	-	6,154	6,154
외교부	본청	-	-	356	356
통일부	본청	-	229	347	576
법무부	본청	-	2,945	16,951	19,896
	검찰청	6,595	3,786	7,342	17,723
	소계	6,595	6,731	24,293	37,619
국방부	본청	-	-	467	467
	병무청	-	-	1,174	1,174
	방위사업청	-	35	-	35
	소계	-	35	1,641	1,676
행정안전부	본청	-	4,951	2,750	7,701
	경찰청	-	-	55,920	55,920
	소방청	-	-	-	0
	소계	-	4,951	58,670	63,621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계
문화체육관광부	본청	-	511	2,318	2,829
	문화재청	-	63	-	63
	소계	-	574	2,318	2,892
농림축산식품부	본청	-	-	4,635	4,635
	농촌진흥청	-	1,669	1,405	3,074
	산림청	32	-	2,666	2,698
	소계	32	1,669	8,706	10,407
산업통상자원부	본청	197	172	914	1,283
	특허청	-	-	-	0
	소계	197	172	914	1,283
보건복지부	본청	1,355	963	1,298	3,616
환경부	본청	-	299	1,655	1,954
	기상청	-	1,112	899	2,011
	소계	0	1,411	2,554	3,965
고용노동부	본청	40	2,709	6,954	9,703
여성가족부	본청	-	513	147	660
국토교통부	본청	-	-	2,830	2,830
	행복중심 복합도시건설청	-	-	-	0
	새만금개발청	59	-	54	113
	소계	59	0	2,884	2,943
해양수산부	본청	1,168	1,909	3,426	6,503
	해양경찰청	-	761	309	1,070
	소계	1,168	2,670	3,735	7,573
중소벤처기업부	본청	-	-	-	0
계		35,228	50,075	162,849	248,152

- 전체적으로 교육이 꾸준히 확대되고 있다.
- 18곳 본청 중 2016년 5곳, 2017년 11곳, 2018년 17곳 기관이 교육 실적을 보고하였지만, 중소벤처기업부 본청은 지난 3년 동안 교육 실적이 전무하다.
- 소방청, 특허청, 행복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지난 3년 동안 교육 실적이 전무하다.
- 조달청은 2016년, 2017년 실적은 있지만 2018년 실적이 없고, 방위사업청과 문화재청은 2016년과 2018년 실적은 있지만 2017년 실적이 없고, 새만금개발청과 산림청은 2016년과 2018년 실적은 없지만 2017년 실적은 있다.
- 인식개선 교육이 일관되게 수행되지 않고 기관에 따라 연도에 따라 실적이 요동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④ 독립기관

〈표 5〉 독립기관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적보고 현황

(단위: 명)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396	1,288	1,923	4,607
국회	944	746	1,434	3,124
대법원	-	-	11,665	11,665
헌법재판소	-	250	167	417
국가인권위원회	254	98	107	459
계	2,594	2,382	15,296	20,272

- 전체적으로 교육이 꾸준히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 대법원은 2018년에, 헌법재판소는 2017년에 처음 교육을 실시하였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국회는 2016년부터 꾸준히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 개별 법률에 의해 설치된 독립기구인 국가인권위원회는 3년 동안 꾸준히 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시간이 갈수록 오히려 교육 참가자의 수가 줄어들고 있다.

(2) 지방자치단체

① 참가자 현황

〈표 6〉 자치단체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적보고 현황

(단위: 명)

지자체	2016년	2017년	2018년	계
서울	887	-	26,934	27,821
부산	5,704	5,217	14,423	25,344
대구	410	1,426	4,211	6,047
인천	200	3,291	5,999	9,490
광주	28	930	1,051	2,009
대전	1,750	1,534	1,599	4,883
울산	512	1,007	7,374	8,893
세종	-	-	1,927	1,927
경기	2,883	4,717	23,249	30,849
강원	1,299	3,377	1,168	5,844
충북	801	129	190	1,120
충남	1,418	2,442	10,505	14,365
전북	1,173	4,202	6,048	11,423
전남	34	3,788	10,870	14,692
경북	633	868	6,379	7,880
경남	4,090	4,190	3,353	11,633
제주	199	269	234	702
계	22,021	37,387	125,514	184,922

- 전체적으로 보면, 2016년과 2017년과 비교할 때 2018년 교육 실적이 급상승하였다.
- 서울과 세종을 제외한 모든 시도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장애인식개선 교육에 참여하고 있다.
- 서울은 2017년, 세종특별시는 2016년, 2017년의 교육 실적이 보고되지 않았다. (실제로 교육을 하지 않았다고보다 교육실적 보고를 하지 않은 것 같다.)

- 지난 3년 동안 교육 실적이 전체적으로 급상승했음에도, 2016년과 2018년을 비교할 때 대전, 강원, 충북, 경남의 교육 참여자 수는 오히려 줄어들었다.

② 교육 참여 자치단체 현황

〈표 7〉 교육 참여 지방자치단체 현황

(단위: 곳)

구분	광역/기초 단체 수	2016년	2017년	2018년
서울	26	4	-	18
부산	17	12	12	16
대구	9	2	7	9
인천	11	1	4	8
광주	6	-	1	3
대전	6	4	4	5
울산	6	2	4	6
세종	1	-	-	1
경기	32	8	16	23
강원	19	6	7	5
충북	12	2	1	2
충남	16	4	3	13
전북	15	4	6	8
전남	23	1	4	13
경북	24	4	4	15
경남	19	10	9	8
제주	1	1	1	1
계	243	65	83	154

- 243곳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들 중 장애인식개선교육에 참여한 수는 2016년 65곳, 2017년 83곳, 2018년 154곳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 하지만 2017년 서울, 2016년 광주, 2016년과 2017년 세종의 경우 교육에 참가한 자치단체가 보고되지 않았다. 광주는 2016년 교육 참석 인원은 보고되었는데, 자

치단체가 아니라 산하기관인 ‘광주광역시교육연구정보원’이 유일하게 교육에 참여하였다.

- 교육에 참여한 자치단체의 수가 전체적으로 상승했음에도 2016년 대비 2018년을 비교할 때 강원과 경남은 교육 참여 자치단체가 오히려 줄어들었다.

③ 3년 동안 교육 참여 실적이 없는 자치단체 현황

〈표 9〉 교육 실적보고가 없는 지방자치단체 현황(2016~2018)

(단위: 곳)

지역	광역/기초 단체 수	교육 실적이 없는 단체 수	교육 실적이 없는 단체 명단
서울	26	7	강북구, 금천구, 노원구, 동대문구, 성동구, 송파구, 영등포구
부산	17	0	-
대구	9	0	-
인천	11	2	강화군, 남구
광주	6	3	광산구, 북구, 서구
대전	6	0	-
울산	6	0	-
세종	1	0	-
경기	32	4	안양시, 오산시, 파주시, 하남시
강원	19	7	속초시, 양구군, 양양군, 정선군, 춘천시, 홍천군, 횡성군
충북	12	7	괴산군, 보은군, 영동군, 음성군, 진천군, 청주시, 충주시
충남	16	1	태안군
전북	15	4	무주군, 임실군, 장수군, 전주시
전남	23	10	고흥군, 구례군, 목포시, 무안군, 보성군, 완도군, 여수시, 영암군, 완도군, 진도군
경북	24	7	구미시, 문경시, 영덕군, 영양군, 울릉군, 청송군, 칠곡군
경남	19	4	거창군, 김해시, 밀양시, 산청군
제주	1	0	-
계	243	56	

- 지난 3년 동안 교육 참여 실적이 없는 자치단체는 전체 243곳 중 56곳(22.95%)이다.
- 자치단체별로 보면 서울 7곳, 인천 2곳, 광주 3곳, 경기 4곳, 강원 7곳, 충북 7곳, 충남 1곳, 전북 4곳, 전남 10곳, 경북 7곳, 경남 4곳 등이다.
- 특히 충북은 전체 자치단체 12곳 중 7곳(58.33%), 전북은 23곳 중 10곳(43.48%), 강원은 19곳 중 7곳(36.84%), 경북은 24곳 중 7곳(29.17%)의 교육 실적보고가 없다.
- 반면 부산, 대구, 대전, 울산의 모든 자치단체는 지난 3년 동안 적어도 1회 이상 교육에 참여하였다(세종, 제주를 제외).
- 전체적으로 특별시와 광역시 같은 대도시의 교육 실적이 상대적으로 양호하고, 광역도 지역은 반대로 상대적으로 실적이 저조하다.

2. 강의 시간 현황 및 평가

(1) 국가기관

〈표 10〉 국가기관 평균 강의 시간

(단위: 분)

대분류	소분류	2016년	2017년	2018년	전체 평균
원격	개별 인터넷	90.00	67.16	76.85	78.00
	동영상 시청	90.00	49.66	60.52	66.73
	기타	-	80.00	89.60	84.80
	소계(평균)	90.00	65.61	75.66	77.09
집합	내부강사	90.00	60.97	58.06	69.68
	외부강사	89.74	69.21	69.58	76.18
	연수형	90.00	55.45	59.69	68.38
	기타	-	38.94	59.00	48.97
	소계(평균)	89.91	56.14	61.58	69.21
전체 평균		89.96	60.88	68.62	71.00

- 평균 강의 시간이 2016년 89.95분, 2017년 60.87분, 2018년 68.62분으로 줄어듦

있다.

- 원격 교육은 2016년 90.00분, 2017년 65.61분, 2018년 75.66분이고 3년 평균은 77.09분이다. 또 집합 교육은 2016년 89.91분, 2017년 56.14분, 2018년 61.58분이고 3년 평균은 69.21분이다. 원격 교육이 집합 교육보다 평균 7.88분 더 길게 강의가 이루어진다.

(2) 지방자치단체

〈표 11〉 지방자치단체 평균 강의 시간

(단위: 분)

대분류	소분류	2016년	2017년	2018년	전체 평균
원격	개별 인터넷	90.00	78.00	78.66	82.22
	동영상 시청	90.00	62.22	50.00	67.41
	기타	-	-	120.00	120.00
	소계(평균)	90.00	70.11	82.89	80.06
집합	내부강사	90.00	55.00	66.00	70.33
	외부강사	90.00	91.05	97.33	92.79
	연수형	-	20.00	69.28	44.64
	기타	-	62.54	61.47	62.01
	소계(평균)	90.00	57.15	73.52	73.56
전체 평균		90.00	63.63	78.20	77.00

- 평균 강의 시간이 2016년 90.00분, 2017년 63.63분, 2018년 78.20분으로 줄어들고 있다.
- 원격 교육은 2016년 90.00분, 2017년 70.11분, 2018년 82.89분이고 3년 평균은 80.06분이다. 또 집합 교육은 2016년 90.00분, 2017년 57.15분, 2018년 73.52분이고 3년 평균은 73.56분이다. 원격 교육이 집합 교육보다 평균 6.50분 더 길게 강의가 이루어진다.

3. 교육 방식 현황 및 평가

(1) 국가기관

〈표 12〉 국가기관 교육 방식

(단위: 곳, %)

대분류	소분류	2016년	2017년	2018년	계
원격	개별 인터넷	9(2.41)	46(10.82)	814(36.73)	869(28.82)
	동영상 시청	91(24.33)	32(7.53)	93(4.20)	216(7.16)
	기타	0(0.00)	3(0.71)	48(2.17)	51(1.69)
	소계	100(26.74)	81(19.06)	955(43.10)	1,136(37.68)
집합	내부강사	151(40.37)	180(42.35)	564(25.45)	895(29.68)
	외부강사	121(32.35)	131(30.82)	455(20.53)	707(23.45)
	연수형	2(0.53)	13(3.06)	38(1.71)	53(1.76)
	기타	0(0.00)	20(4.71)	204(9.21)	224(7.43)
	소계	274(73.26)	344(80.94)	1,261(56.90)	1,879(62.32)
계		374(100)	425(100)	2,216(100)	3,015(100)

- 장애인식개선교육 방식은 원격 교육이 1,136곳(37.68%)이고 집합 교육이 1,879곳(62.32%)이다.
- 세부적으로 보면, 내부강사 895곳(29.68%), 개별 인터넷 869곳(28.82%), 외부강사 707곳(23.45%), 집합 기타 224곳(7.43%), 동영상 시청 216곳(7.16%), 연수형 53곳(1.76%), 원격 기타 51(1.69%)순이다.
- 특이점을 살펴보면 개별 인터넷 강의가 큰 폭으로 상승하였다. 2016년과 2018년 점유율을 비교하면 2.41%에서 36.73%로 급상승하였다.
- 이와 반대로 동영상 시청은 같은 시기 24.33%에서 4.20%로 줄었다. 또 내부강사 활용은 40.37%에서 25.45%로, 외부강사 활용은 32.35%에서 20.53%로 다소 큰 폭으로 줄었다.

(2) 지방자치단체

〈표 13〉 지방자치단체 교육 방식

(단위: 곳, %)

대분류	소분류	2016년	2017년	2018년	계
원격	개별 인터넷	3(3.26)	22(17.05)	79(20.63)	104(17.22)
	동영상 시청	16(17.39)	10(7.75)	16(4.18)	42(6.95)
	기타	0(0.00)	0(0.00)	3(0.78)	3(0.50)
	소계	19(20.65)	32(24.81)	98(25.29)	149(24.67)
집합	내부강사	16(17.39)	11(8.53)	46(12.01)	73(12.09)
	외부강사	57(62.00)	61(47.29)	160(41.78)	278(46.03)
	연수형	0(0.00)	1(0.78)	7(1.83)	8(1.32)
	기타	0(0.00)	24(18.60)	72(18.80)	96(15.89)
	소계	73(79.35)	97(75.19)	285(74.41)	455(75.33)
계		92(100)	129(100)	383(100)	604(100)

- 장애인식개선 교육 방식은 원격 교육이 149곳(24.67%)이고 집합 교육이 455곳(75.33%)이다.
- 세부적으로 보면, 외부강사 278곳(46.03%), 개별 인터넷 104곳(17.22%), 집합 기타 96곳(15.89%), 내부강사 73곳(12.09%) 동영상 시청 42곳(6.95%), 원격 기타 3곳(0.50%) 순이다.
- 특이점을 살펴보면 국가기관과 마찬가지로 개별 인터넷 강의가 큰 폭으로 상승하였다. 2016년과 2018년 점유율을 비교하면, 3.26%에서 20.63%로 급상승하였다.
- 이와 반대로 동영상 시청은 같은 시기 17.39%에서 4.18%로 줄었다. 또 내부강사 활용은 17.39%에서 12.01%로 소폭 줄었지만, 외부강사 활용은 62.00%에서 41.78%로 크게 줄었다.

4. 강사 소속 분석 및 평가

(1) 외부 강사 소속 분석

〈표 14〉 외부 강사 소속 현황

(단위: 명, %)

구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계
	2016	2017	2018	2016	2017	2018	
장애인단체 (또는 기관)	18 (21.43)	25 (21.01)	105 (24.08)	20 (52.63)	20 (39.22)	52 (36.11)	240 (27.52)
일반 민간단체 (또는 기업,기관)	14 (16.67)	13 (10.92)	116 (26.61)	1 (2.63)	8 (15.69)	18 (12.50)	170 (19.50)
공공기관	31 (36.90)	45 (37.82)	120 (27.52)	7 (18.42)	15 (29.41)	31 (21.53)	249 (28.56)
복지관	9 (10.71)	24 (20.17)	80 (18.35)	8 (21.05)	6 (11.76)	31 (21.53)	158 (18.12)
대학	12 (14.29)	12 (10.08)	15 (3.44)	2 (5.26)	2 (3.92)	12 (8.33)	55 (6.31)
계	84 (100)	119 (100)	436 (100)	38 (100)	51 (100)	144 (100)	872 (100)

* 강사 소속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와 개인 자격 강사는 제외한 수치임

* 공공기관 : 국가기관, 지자체,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개발원, 장애인고용공단, 특수교육원, 국립재활원, 양성평등진흥원 등 포함

* 일반 민간단체(기업, 기관) : 교육전문민간기업이나 단체, 협동조합,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 등 포함

■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인식개선 강의를 한 강사의 소속은 공공기관 249곳(28.56%), 장애인단체 240곳(27.52%), 일반 민간단체 170곳(19.50), 복지관 158곳(18.12%), 대학 55곳(6.31%) 순이다.

■ 2018년 기준으로 국가기관은 공공기관 120곳(27.52), 일반 민간단체 116곳(26.61%), 장애인단체 105곳(24.08%) 순이고,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단체 52곳(36.11%), 공공

기관 31곳(21.53%), 복지관 31곳(21.53%) 순이다.

- 세부적으로 보면, 일반 민간단체 소속 강사의 강의 점유율이 전체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2016년과 2018년 점유율을 비교하면, 국가기관의 경우 16.67%에서 26.61%,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2.63%에서 12.50%로 증가하였다. 반면, 대학 소속 강사의 강의 점유율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소폭 상승했지만 국가기관에서 14.29%에서 3.44%로 크게 줄었다.

5. 합의

- ① **법정 의무가 된 장애인식개선 교육을 강제할 수 있는 법률적, 행정적 보완조치가 필요하다.** 가령, 「장애인복지법」을 개정하여 국가 및 공공기관의 교육 실적을 매년 공표하여 의무 이행을 강제할 필요가 있다.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은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사업주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다.
- ② **장애인식개선교육 시간의 최저선을 규정하여 교육의 효과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 피교육기관의 혼란을 방지하고 최소한의 교육 효과를 거두기 위해 「장애인복지법」 최저 교육 시간을 규정할 필요는 있다. 참고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5조의2(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는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연 1회, 1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고 최저선을 정해 두고 있다.
- ③ **인터넷이나 동영상을 활용한 교육보다 외부강사를 활용한 집합교육을 확대하여 교육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모두 개별 인터넷을 통한 장애인인식개선 교육의 비중을 크게 늘리고 외부강사를 활용한 교육은 점차 줄이고 있어 인식개선교육의 효과가 의문시되는 현실이다. 「장애인복지법」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미디어 교육을 연속하여 진행하지 못하게 하고, 대신 적어도 2~3년에 한번은 외부강사를 활용한 집합교육

을 실시하도록 강제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 ④ 장애인식개선교육의 기회가 장애인단체와 장애 당사자들에게 돌아갈 기회를 더 많이 보장할 필요가 있다. 장애인식개선 교육은 경험이 풍부하고 잘 훈련된 장애 당사자가 수행하는 것이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고, 장애인 일자리 창출이라는 공익적 목적에도 기여할 수 있다. 한국장애인개발원은 장애인식개선교육 현황 보고를 받을 때 외부강사의 장애 유무를 표시하도록 하여 장애 당사자 강사의 참여율을 별도 관리하여 정책 개선을 위한 자료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발표 3

교육담당자, 강사 조사 결과 분석 / 운영교재

이호선 (교과교과협동조합 연구원)

장애 인식개선 교육 관련자 조사 결과 - 초점집단조사 분석

이 호 선(교탁교탁 협동조합 연구원)

1. 초점집단면접(FGI) 조사 개요

- 조사 참여자
 - 교육담당자 4명(지방자치단체, 기타공공기관)
 - 강사 5명(장애인단체, 장애인복지관 / 장애인, 비장애인)
- 조사 영역
 - 교육 운영 현황 및 평가
 -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운영교재

2. 교육담당자 조사 결과

● 문제점

- 집합교육의 낮은 참석률, 형식적인 참석
 - 자발적인 참여 유도 어려움/ 집중하지 않거나 자리 이탈
- 집합교육의 미운영, 원격교육 등으로 대체
 - 원격으로만 진행된 경우도 있음(편차 존재)
- 교육 효과에 대한 미흡한 점검
 - 교육생 만족도 조사 미실시 / 계량화된 실적보고
- 교육담당자의 교육에 대한 이해 및 정보의 부족
 - 인식의 차이 / 낮은 업무 비중 / 형식적 운영도 무방한 분위기 / 가이드라인 부재

2. 교육담당자 조사 결과

● 개선방안

- 집합교육에 대한 강제성 부여
 - 필수교육으로 전환 / 집합교육 이행 비율 강제
- 흥미있는 교육내용과 방법 마련
 - 테마별, 연도별 콘셉트 / 흥미로운 진행방식
- 장애인 당사자 강사에 대한 고려
 - 사고의 전환에 효과 / 편견과 선입관 강화 우려

2. 교육담당자 조사 결과

● 개선방안

- **집합교육 시간·횟수 확대 및 소규모 진행**
 - 소통으로 교육성과 향상 / 횟수 증가에 대해 위탁 제시/ 관심 감소 우려
- **고위직 교육에 대한 의무화**
 - 정책에서의 교육의 실효성 확보
- **운영교재 제공 및 담당자 교육 실시**
 - 가이드라인 제공 / 연초에 담당자 교육

2. 강사 조사 결과

● 문제점 및 개선방안

- **법, 제도 관련 사항**
 - 교육 명칭의 부적절함 / 타 교육과의 유사성으로 인한 혼란
 - 명시된 교육 내용의 부적절함, 개정 필요
 - 체험교육에 대한 비판(부정적 인식 강화)
 - 유사교육의 개별적 시행으로 인한 실효성 부족, 주제별 교육 등 모색
 - 별도 수행의 문제, 직무 전·과정 체계화된 교육과정에 포함할 필요
- **교육 목적에 부적절한 교육 내용**
 - 수요자의 요구와 강사 교육내용의 간극, 교육내용 개정 필요
 - 체계적 전달되지 못함
 - 장애예방을 교육내용으로 수행하는 문제

2. 강사 조사 결과

● 문제점 및 개선방안

- **강사의 역량 (교육의 질) 격차 존재**
 - 보험, 다른 법정교육과 함께 무료 강의
 - 위험하지 않는 강사 찾는 경향
 - 강사진에 지역격차
 - 잘못된 정보로 강의
 - 강사에 대한 정보제공 어려움
- **질 향상에 대한 개선방안**
 - 진입 자격 기준을 정해야 한다면 신중하게 / 자격기준 자체가 위험
 - 세부적이고 명확한 교재가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개발, 공개
 - 모니터링 또는 보수교육 강화
 - 장애당사자 강사 민간조직의 자생적 성장을 공공기관에서 지원
 - 교육 조정 담당 고정 또는 여러 관련 교육 강사 네트워크

2. 강사 조사 결과

● 문제점 및 개선방안

- **교육생이 배려되지 않고, 짧은 교육시간**
 - 짧은 교육시간, 최소한 2시간 기준 필요
 - 획일적인 날짜 배정으로 피곤, 교육생이 편안한 시간에 참석
- **과도한 수강인원, 불균등한 참석**
 - 현재 50명~200명 대규모 진행, 최대 30명 이내가 적절함
 - 일부 직원만 교육, 고위직, 민원발생 집단, 비정규직, 무기계약직 등 참석 강제
- **교육 자체의 불편함**
 - 교육의 피로도, 편안한 공간, 집중할 수 있는 연수방식 등 제안

3. 초점집단면접 조사의 함의

- 집합교육의 교육생 참석률이 낮고, 형식적인 참석 문제가 확인됨. **집합교육의 참석인원을 실질적으로 증가시킬 방안 모색 필요**
- 장애 인식개선 교육이 **교육목적에 적절하지 않은** 교육내용과 방법으로 진행되기도 함. 법과 실제 운영상 개선 필요
- 집합교육이 **대규모 수강인원, 짧은 교육시간, 적은 횟수로 형식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교육의 환경에 대한 개선 필요
- 강의식으로 획일적, 백화점식 진행되며 매번 유사하게 반복되는 경향. 교육생의 특성을 고려하여 **교육내용 전달 효과를 높일 진행 방식 필요, 체계적 진행 필요**
- 장애 인식개선 **교육의 질에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 시급하다는 지적. 질을 저하시키는 구조적 차원의 문제를 해결, 역량 강화 방안을 다각도로 신중하게 마련
- 운영에 참고할 **가이드라인 부재**로 교육 운영에 어려움, 교육 양상에도 편차 존재함. 이에 운영교재 개발에 대한 의견 제시

‘장애 인식개선 교육’ 운영교재

운영교재 목차

- I 장애 인식개선 교육의 이해
- II 장애 인식개선 교육과정 계획
- III 장애 인식개선 교육과정 운영 준비
- IV 장애 인식개선 교육과정 운영
- V 장애 인식개선 교육과정 정리 및 보고
- VI 활용서식(생략)

I 장애 인식개선 교육의 이해

▶ 교육의 목적

- 장애인의 권리와 존엄성에 대한 존중심 고취
- 장애인의 능력과 사회적 기여에 대한 인식 증진
-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 제거
-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권리보장 증진
-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를 위한 통합사회(inclusive society) 조성

▶ 교육의 법적 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25조, 시행령 제16조, 시행규칙 제2조의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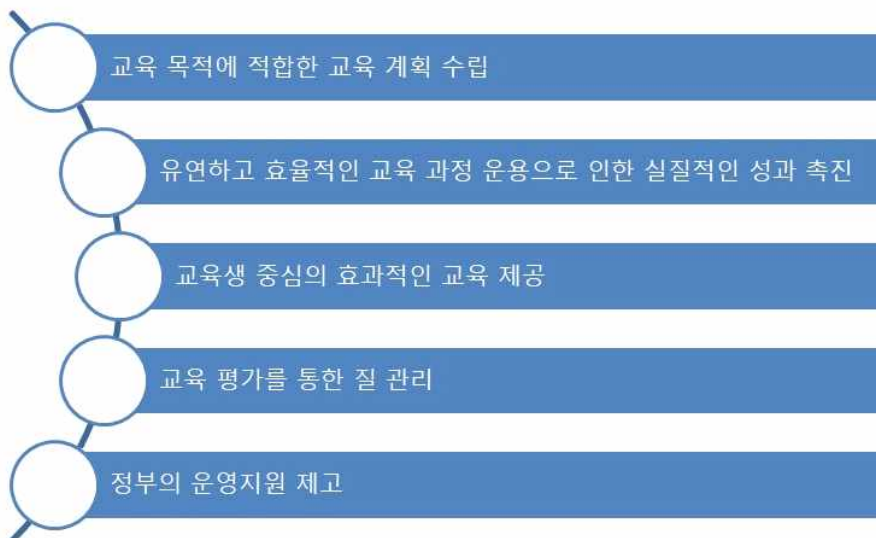
※ 주의: 『장애인복지법』 장애 인식개선 교육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직장 내 장애인식개선 교육

I 장애 인식개선 교육의 이해

▶ 기본 방향



I 장애 인식개선 교육의 이해

▶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

- 교육대상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특수법인
 - 「영유아보육법」에 의해 설치된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의해 설치된 학교, 「초·중등교육법」에 의해 설치된 학교, 「고등교육법」에 의해 설치된 학교
- 교육 방법
 - 1년에 1회 이상 실시
 - 집합 교육 또는 인터넷 강의 등을 활용한 원격 교육, 체험교육 등
- 실적보고 : 교육 실시 후 30일 이내
 - 실적관리시스템 <https://www.able-edu.or.kr> / 한국장애인개발원

I 장애 인식개선 교육의 이해

• 교육 내용

현행 「장애인복지법」상의 교육 내용

- 장애의 정의
- 장애인의 인권과 관련된 법과 제도
- 장애인의 행동특성 및 능력
- 장애인과 의사소통하는 방법
- 장애인 보조기구 및 장애인편의시설
- 그 밖에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내용

바람직한 교육 내용

- 기본적으로 사람을 존중할 수 있는 인식의 제고
- 모두가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는 공동체 의식의 형성
- 장애가 갖는 차이에 대한 존중
- 장애인의 인정
- 장애아동의 점진적 발전능력 및 정체성 유지 권리에 대한 존중
- 신체적 및 정신적 완전함을 존중받을 권리
- 그 밖에 인권의식을 높일 수 있는 내용

I 장애 인식개선 교육의 이해

▶ 교육 운영 흐름도

I. 교육운영 계획

- 1. 욕구 조사 2. 교육과정 구성 3. 강사 선정 4. 교육 장소 선정 5. 계획 단계 체크리스트

II. 교육운영 준비

- 1. 홍보 활동 2. 교육자료 점검 및 제작 3. 안내 자료 준비 4. 교육 전 강사 관리 5. 교육 장소 및 환경 점검

III. 교육운영

- 1. 교육과정 안내 2. 교육과정 진행 3. 만족도 설문 조사

IV. 교육과정 결과정리 및 보고

- 1. 교육과정 평가결과 내부 보고 2. 행정업무 마무리 3. 보건복지부 보고 4. 교육과정 리뷰

감사합니다.

토론

• 토론 1 •

개선방안에 대한 법적 검토

최정규 (경기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장, 변호사)

• 토론 2 •

개선방안 및 운영교재 현장 적용 방안

한서경 (서울시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권익보장팀장)

• 토론 3 •

장애인권증진 측면에서 검토

이용석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정책실장)

• 토론 4 •

보건복지부 정책 반영 및 향후 대책

신용호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장)

• 토론 5 •

한국장애인개발원 정책 반영 및 향후 대책

박지연 (한국장애인개발원 미래전략부 장애인식개선팀장)



토론 1

개선방안에 대한 법적검토

최정규 (경기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장, 변호사)

개선방안에 대한 법적검토

최정규 (경기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장, 변호사)

1. 토론자의 기본적 입장

제도적 측면에서의 개선방안으로 제시하는 1)장애 인식개선 교육의무 이행 강제화, 2)장애인식개선교육 교육시간 최저기준 설정, 3)교육내용 개정, 4)교육방법 중 외부강사에 의한 집학교육 최저기준설정 및 체험교육삭제, 5)교육보고 사항에 의무교육 대상 인원 포함에 대해 기본적으로 동의합니다.

연구결과로 제시하는 개선방안에 대해 이를 보완하는 의견을 덧붙이는 것으로 토론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2. 장애인인식개선 교육의무 이행 강제화

가. 장애인복지법 제25조 제2항에는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어린이집·각급학교의 장, 공공단체의 장은 소속 직원·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실은 전 직원이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직원, 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나. 이러한 현실은 법과 시행령 자체의 문구가 명확하지 않은 이유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장애인복지법 제25조 제2항과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 ‘소속 직원·학생을 대상으로’를 ‘소속 직원·학생 전체를 대상으로’라고 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 교육방법에 집합교육 뿐만 아니라 원격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기에 위와 같이 개정된다고 하더라도 국가기관 등에서 큰 무리 없이 교육을 실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라. 아울러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교육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방법으로 과태료 부과제도 보다는 실적공표제도가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됩니다.

‘장애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자’에게 부과되는 과태료와 관련하여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실시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예를 들어 관련 국가기관 공무원 중 일부에만 실시한 경우에 인식개선교육을 실시했다고 볼 것인지 여부)의 불명확성 등으로 실제 부과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3. 교육내용 개정

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32조 제4항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에 대한 괴롭힘 등을 근절하기 위한 인식개선 및 괴롭힘 등 방지교육을 실시하고 적절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장애인차별과 학대에 대해 교육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나. 장애인식개선교육은 학대신고의무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는 그 목적이 다르지만, 교육내용의 하나로 장애인차별, 장애인학대를 포함시키는 것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토론 2

개선 방안 및 운영 교재 현장 적용 방안

한서경 (서울시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권익보장팀장)

장애인식개선 교육

개선 방안 및 운영 교재 현장 적용 방안

한서경 (서울시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권익보장팀장)

□ 서울시 장애인식개선 교육 실시 현황

2015년 12월 29일 개정된『장애인복지법』이 2016년 6월 30일 시행됨에 따라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애 인식개선 교육이 의무화되었다.

개정된『장애인복지법』은 확대 적용된 교육 대상기관을 명시하고, 교육 내용과 교육 방법 및 교육 결과보고 등의 절차를 법제화하여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교육을 의무화하였다.

장애 인식개선 교육은 장애의 정의, 장애인의 인권과 관련된 법과 제도, 장애인의 행동 특성 및 능력, 장애인과 의사소통하는 방법 등 의 내용으로 집합 교육 또는 인터넷 강의 등을 활용한 원격 교육, 체험교육 등의 방법으로 1년에 1회이상 실시하고 있으며 의무 교육 대상기관은 교육 이후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서울시에서는 매년 서울시, 자치구, 사업소, 투자출연기관 소속 직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및 이용자, 일반 시민 등을 대상으로 장애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에 보고하고 있다.

2018년 추진 실적을 살펴보면 서울시, 자치구, 사업소, 투자출연기관 등 서울시 산하 직원 76,461명,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자 및 종사자 192개소 10,601명, 장애인복지시설 이용자 및 종사자 256개소 12,584명, 특수교육지원청 및 국립 특수학교 소속

교사 및 직원 2,827명, 장애인 활동보조인, 자원봉사센터 직원 등 일반시민 9,089명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였으며 장애 인식개선 교육을 통하여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편견을 해소하고 장애인의 사회통합을 도모를 위하여 힘쓰고 있다.

또한 서울시에서는 공무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시민 등 대상 및 업무 특성을 고려하고 현장 사례를 기초로 한 『장애인 인권교육 교재』를 개발하고, 발달장애인 도전 행동 사례별 개입 전략 및 대응 방안을 위한 『중증 발달장애인 도전 행동의 이해 및 대응 매뉴얼』을 전국 최초 자체 개발 중에 있으며, 향후 관련 기관에 교재를 배부하여 시설 종사자의 발달장애인 도전행동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등 장애인 인식 개선에 기여하고 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는 장애인복지법 제25조 제1항에 근거하여 『서울시 장애인 인식개선 홍보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금년도에는 장애인 인식개선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강연회(1회, 연사 5명, 500명 참석), 웹드라마 1건 제작, 다큐멘터리 1건 제작, 장애유형별 카드뉴스 5건을 제작하였으며, 내년도에는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장애인 인식개선 공익광고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 장애인식개선 교육 개선 방안 및 운영 교재 현장 적용 방안

『장애인 복지법』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 대학교 및 공공기관 등의 소속 직원 및 학생을 대상으로 ‘장애 인식개선 교육’의 명칭으로,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에는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의 명칭으로 규정되어 운영되고 있다. 두 법을 모두 적용받는 기관 입장에서는 혼란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교육의 명칭도 유사하고 교육의 내용도 유사하기 때문에 두 교육을 통합 또는 조정하는 방안에 적극 찬성한다.

또한 인권 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등 유사한 교육이 개별법으로 의

무화 되면서 교육마다 개별적으로 시행되어 여러 교육을 이수해야하는 직원과 교육을 담당하는 담당자의 부담이 크고 여러 교육이 형식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실효성이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비슷한 주제를 묶어 교육을 하거나 여러 교육을 동시에 진행하는 방법이 교육생이나 교육 담당자의 부담을 줄여 교육의 효과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

※ 서울시 필수학습 과정: 청렴교육(연 5시간 이상), 성희롱 등 폭력예방교육(연 4시간 이상), 인권교육(연 1회 이상), 통일교육(연 1회, 1시간 이상) 등

법정 의무 교육: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교육, 노동권익 교육, 아동학대 예방교육 등 다수

『장애인 복지법』 시행령 제16조에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소속 직원·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라고 나와 있다. 연구용역 결과 보고서의 내용처럼 교육 시간을 어느 정도로 해야 가장 효율적일 수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지식은 없는 상황이지만 교육기관의 혼란을 방지하고 최소한의 교육 효과를 거두기 위해 「장애인 복지법」에 최저 교육 시간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참고로 서울시의 경우 장애인식 개선 교육을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제7조에 의거 연2회 실시하고 있으며 본청은 1회 교육 시 2시간 이상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현재 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교육 내용은 장애의 정의, 장애인의 인권과 관련된 법과 제도, 장애인의 행동 특성 및 능력 등인데 장애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내용으로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 실제로 이런 내용으로 교육을 진행하다보면 정보 제공의 수준에 머무르기 때문에 교육의 내용이 너무 딱딱하고 지루해지기 쉬워 형식적 교육이 되기 쉽다. 개정안에서 제안 한 것처럼 사람을 존중할 수 있는 사고를 높이기 위하여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내용, 모두가 연대하여 살아갈 수 있는 공동체 의식을 형성할 수 있도록 공동체 의식 형성 내용과 같이 ‘장애’ 그 자체에 대한 정체성의 존중 및 고유성의 인정이라는 내용이 추가 된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보편적 가치로서의 인권적 접근으로 장애에 대한 인식개선에 대한 효과적인 교육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연구 용역 보고서에서 제시한 장애 인식개선 교육 개선방안 중 제도적 측면에서의 개선방안을 살펴보면 장애 인식개선 교육의 효과성 제고를 위하여 장애인식 개선 교육 미 실시에 따른 과태료 부과 체계 마련, 각종 기관 평가지표에 장애 인식개선 교육 실시 여부 포함, 실적 공표 제도 마련 및 구체적인 실적 평가 방안 마련하여 장애 인식개선 교육 의무 이행을 강제화하겠다고 하였다. 물론 위와 같은 강제성 조항이 있으면 교육의 양적 성장은 높아지겠지만 지금과 같이 결과 보고를 위한 형식적 교육에 그치기 쉽고 교육의 질적인 면까지 좋아 진다고 장담할 수가 없다. 교육의 질적 수준까지 높이기 위해서는 전반적인 교육의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장애 인식개선 교육을 위한 전담기관을 만들어 표준화된 교육 교재를 개발하고 양질의 강사를 양성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교육수요 기관에서 언제든지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면 지금보다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실제로 교육을 진행하다보면 외부강사를 찾기 쉽지가 않아 고용노동부 산하공공기관인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등록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강사를 활용할 때가 종종 있다.

여성가족부의 ‘성희롱 등 4대 폭력예방 교육’의 경우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서, 고용노동부의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의 경우 고용노동부 산하공공기관인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전담하여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이와 같이 장애인복지법 ‘장애 인식개선 교육’도 전체 사업의 총괄은 보건복지부에서 하고 사업의 전문성 및 신뢰성을 고려하여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강사 양성, 강사 관리 및 제공, 교육 콘텐츠 개발 등의 업무 분담을 하여 체계적인 교육 시행 및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효과적인 장애 인식개선을 위해서는 교육의 시간, 내용, 강사의 자질 등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사회 전반적인 인권 의식의 향상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물론 쉽지 않은 일이지만 장애인 학대, 차별 등 인권침해에 대한 상담·조사·구제 활동 등을 실시하고 있는 서울시 장애인옹호기관에서 어린이집, 학교, 직장 등을 대상으로 체계적이고 꾸준한 교육을 실시 한다면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이 점차 나아지지 않을까 기대해본다.

토론 3

장애인권증진 측면에서 검토

이용석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정책실장)

장애 인식개선 교육의 인식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용석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정책실장)

1. 장애 인식개선 교육의 계도주의적 교육 방식

처음 토론에 참여해 달라는 제의가 왔을 때 좀 심란했다.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교육한다는 방식의 계도주의적 발상의 장애 인식개선 교육에 대한 의아함과 장애인 당사자로서의 불편함이 있어왔던 터여서 이 교육이 실제 장애 인식개선의 효과가 있으리라고는 믿지 않는 입장이었다. 또, 실제 장애 인식개선 교육이 이뤄지는 현장을 경험한 후로는 더욱 이러한 생각이 굳어졌다. 물론, 장애 인식개선 교육이 왜 「장애인복지법」 상에서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 제거, 장애인의 사회 참여와 권리보장 증진, 장애인, 비장애인 통합 사회조성’을 목적으로 의무화 되었는지는 이해한다. 그 연유 또한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 제8조 인식제고 조치 규정과 제24조의 모든 교육과정에 있어 장애와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장애인의 권리존중 및 존엄성 존중 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했고, 우리나라도 유엔 장애인권리헌장의 비준국가이며 장애 인식개선 교육을 통해 국민들이 그동안 장애에 대해 잘못 알고 있거나 그릇된 편견을 바로 잡아주고자 실시되는 법정의무 교육이라는 사실도 분명히 알고 있으며, 장애차별의 주된 원인 중의 하나로, 장애인에 대한 비장애인들의 부정적인 인식의 개선 및 사회적 편견의 제거를 위해 특별히 노력할 필요하다는 것 또한 동의한다.

그럼에도 현재의 방식, 장애의 정의를 설명하고, 장애인 관련한 법과 제도를 이야기하며, 또 장애인의 행동특성 및 능력, 장애인과 의사소통하는 방법이나 보조기기 및 편의시설 등을 설명하는 내용으로 연 1회, 집합교육 또는 인터넷 강의 등의 원격교육, 체험교육 하는 계도식 교육 방식으로 장애차별이 해소될까 하는 미심쩍은

생각을 지울 수 없다.

보고서는 기왕에 장애계를 중심으로 지적되었던 장애 인식개선 교육의 문제점들을 대부분 짚었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다. 제도적 측면에서는 장애 인식개선 교육 의무 이행 강제화하고, 미실시에 따른 과태료 부과 체계 마련, 각종 평가지표에 장애 인식개선 교육 실시 여부 포함하여 각종 평가지표에 장애 인식개선 교육 실시 여부 포함시키고, 실적 공표 제도 마련 및 구체적인 실적 평가 방안까지 매우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다. 또한 교육 목표의 수립, 홍보 강화, 교육 내용의 난이도 조정, 다양한 교육 방법의 활용, 수규모 교육 진행 및 교육 운영 횟수를 증대시키고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강사의 역량을 강화 지원 등의 방안까지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그리 새로울 것이 없는 대책들이다. 물론 보고서에서 제시한 장애 인식 개선 교육의 개선방안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닌 이전에도 계속 논의되고 지적되었던 것들의 반복이라는 뜻이다.

실제 지난 2018년 한국장애인인권포럼이 주최한 정책박람회 이슈5에서는 장애 인식 개선 교육의 법제도화 이후 실태와 발전방향을 주제로 한 토론회가 있었는데, 당시의 결론 또한 이번 보고서의 내용과 대동소이하다. 직장 내 인식개선 교육처럼 미실시 기관에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해서 징벌적 조건이 될 수 있을까 하는 문제와 그 대상이 민간기업이 아닌 공공기관일 경우에는 그 실효성은 더 떨어지는 상황에서 과태료 규정은 미실시 기관에 면죄부만 주는 격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당시 비교되었던 네 가지 법정 의무교육의 징벌적 과태료 또는 과징금과는 꽤 차이가 있었다.

〈타 법정 의무교육 사례 현황〉

구분	4대 폭력예방 교육	직장 내 장애인식개선교육	장애인식개선 교육
의무 대상	초·중·고, 보육시설,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단체	사업장의 사업주 및 근로자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각급 학교, 어린이집 소속 직원 및 학생
관련 법률	• 양성평등기본법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장애인복지법
점검 규정	〈규정 있음〉	〈규정 있음〉 - 법 제5조의2③	〈규정 없음〉
강제 조치 규정	〈규정 있음〉 - 부진기관 1년차 관리자 특별교육 - 2년 이상 언론공표	〈규정 있음〉 - 법 제86조② : 미 이행 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	〈규정 없음〉
강사 양성 규정	〈규정 있음〉	〈규정 있음〉 - 법 제5조의3③ : 장애인식개선 교육기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강사 1명 이상 두어야함.	〈규정 없음〉

2.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서의 장애 인식개선 교육

2006년 12월 13일, 유엔본부에서 개최된 제61차 총회에서 회원국 192개국의 만장일치로 통과된 장애인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은 장애인의 기본적 인권보장을 위해 국제사회가 보여준 지속적인 노력의 결실이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논의되고 있는, 장애 인식개선 교육은 제8조(Awareness-raising)에 장애와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당사국으로 하여금 인식제고를 위한 다양한 조치를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8조의 인식제고 조치(measures to raise awareness)란 당사국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 인식개선 프로그램과 방송매체, 신문, 인쇄매체 등을 통한 인식제고 홍보 등을 의미하며, 영·유아 시기부터 초·중고등 과정 단계까지의 교육과정, 일반 대중 및 장애 관련 종사자 및 전문가를 위한 인식개선훈련 등도 포괄하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제8조제1항은 당사국에게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즉각적이고 효과적이며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였는데, ①가족 단위를 포함한 사회적 장애인에 관한 인식을 향상시키고 장애인의 권리와 존엄성에 대한 존중의 고양(제8조제1항a), ②성별과 연령을 기반으로 한 삶의 모든 영역에서 장애인에 대한 고정관념, 선입견, 유해한 관습을 근절토록 규정(제8조제1항b), ③장애인의 능력과 공헌에 대한 인식을 증진시키도록 명시(제8조제1항c)하였다. 또한 제24조 교육(Education)은 모든 교육과정에서 장애와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장애인의 권리 존중 및 존엄성 존중 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해야 하고, 긍정적이고 올바른 장애관련 교육커리큘럼, 프로그램 마련 및 전문가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권리협약이 제정되기 이전인 1993년 UN은 ‘장애인의 기회평등에 관한 표준규칙’ (Equalization of Opportunitie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이하 표준규칙)을 제정하였는데, 규칙1(Rule 1)은 장애 ‘인식제고(Awareness-raising)’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는데, 사회에서의 장애인, 장애인의 권리, 장애인의 욕구, 장애인의 잠재력 및 기여에 대한 인식을 증진시키기 위한 다양한 조치들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차별의 주된 원인의 하나로,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과 편견에 주목했다. 이는 오랜 역사와 문화 속의 결과로 장애차별을 효과적으로 제거하기 위해서는 부정적인 인식 개선 및 사회적 편견의 제거를 위한 특별한 노력이 필요하며 이러한 노력의 일환이 장애 인식제고를 위한 교육이다.

그러므로, 보고서에서 지적했듯 장애 인식개선 교육의 내용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현재 「장애인복지법」 상 교육 내용 외에 장애인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사람을 존중할 수 있는 사고를 높이기 위하여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내용, 모두가 연대하여 살아갈 수 있는 공동체 의식을 형성할 수 있도록 공동체 의식 형성 내용이 추가되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교육내용을 제시하면 「UN 장애인권리협약」 제3조 일반원칙 라)항 장애가 갖는 차이에 대한 존중과 인간의 다양성 및 인류의 한 부분으로서의 장애인의 인정, 아)항 장애아동의 점진적 발전능력 및 정체성 유지 권리에 대한 존중, 제17조 신체적 및 정신적 완전함을 존중받을 권리 등과 같이 ‘장애’ 그 자체에 대한 정체성의 존중 및 고유성 인정이라는 내용이 담길 수 있어야 한다. 보편적 가치로서의 인권적 접근이 장애라는 특수성을 어떻게 수용하고 존중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담길 수 있어야 한다.”

인권은 인간이 인간다운 존엄한 삶을 누리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필수 조건을 누구나 제약 없이 누릴 수 있는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 이를 제약 없이 제공할 국가와 사회의 의무를 규정하는 보편적 기준이다(국가인권위원회, 2006a). 인권은 장애, 비장애와 상관없이 보편적, 불가분적, 불가침적, 총체적 의미의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무조건적으로 보장할 의무를 국가에 부여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강력한 의미를 가지는 기본적인 권리 규정이다.

장애 인식개선 교육을 인권을 기반으로 한다면 ①인권을 보호, 신장하는데 요청되는 지식, 태도, 기술을 습득하는 모든 교육으로서 인권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 ②인권을 보장할 의무가 국가에 있기 때문에 인권교육의 권리를 보장할 의무 역시 국가에 있다. ③인권교육에 대한 국가의 의무는 CRPD외에도 인권 관련한 모든 협약의 조항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인권을 존중하는 국가로써는 방치할 수 없는 의무 사항이 된다.

특히 우리나라의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의 대한 교육, 인권보장을 위한 교육은 타인과 자신의 인권 침해를 줄이고, 동시에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자유롭고 공정하며 평화로운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사회를 구축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며, 다음과 같이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국가인권위원회, 2006a). ①민주적 절차에 따른 개인의 보편적 권리가 존중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 필요하다. ② “누구도 타인의 권리를 짓밟을 권리는 없다(세계인권선언 제30조).” 는 것을 인권교육을 통해 모든 사람들이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 ③획일적 가치보다는 창의성과 다양성이 존중되고, 경쟁과 더불어 협력이 요구되는 현대사회의 상황에 비추어볼 때, 대안적인 보편적 가치교육이 필요하다. ④ 인권교육은 인권을 침해받고 있는 사회적 약자들이 인권에 대해 자각할 수 있도록 하며, 다른 사회구성원들이 사회적 소수자들에 대해 공감하고,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하다. ⑤우리와는 다른 문화적, 언어적, 민족적, 환경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그들의 보편적 인권을 존중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이 필요하다. ⑥인권교육의 필요성은 교육대상의 다양성에서도 도출된다.

3. 제언 - ‘장애’에 덧씌워진 프레임 깨기

차별의식은 각 개인이 의식이 갖는 일정한 생각의 프레임이 원인이기도 하다. 따라서 각 개인이 스스로 생각의 프레임을 되돌아보는 실천에서 인권을 기반으로 한 ‘장애교육’은 시작되어야 한다. 타인을 어떤 존재로 바라보고 있는가, 사건을 어떤 관점으로 해석하는가에 따라 사람들은 세상을 향한 태도 또한 달라진다. 결국 ‘장애 인식개선 교육’이나 ‘장애인권교육’이라는 틀도 기존에 ‘장애’를 바라보는 사회적 인식 즉 불쌍하다, 추하다, 도와줘야 하는 존재, 세금 잡아먹는 존재들이라는 강고한 프레임을 깨고자 하는 시도여야 한다. 장애를 가진 사람의 신체 결함이나 손상을 이해시켜 배려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진 특징이 이 사회에서 어떻게 ‘장애’로 구성되는지, 어떤 사회적 조건들이 그 사람의 장애를 더 ‘장애화’하는지 이야기함으로써 장애인=배려 받는 자, 비장애인=배려하는 자와 같은 구도가 아니라 보편적 인권의 문제로 ‘장애’를 이해하고 고민할 수 있는 일종의 ‘화두’를 제공하는 기회가 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한 조건이 있을 텐데, 현재의 교육 방식과 내용으로 ① 장애를 대상화하지 않고 한 사람의 권리주체로 교육이 가능한가? ② 장애인을 배려나 인간승리의 주인공으로 만들지 않고도 함께 살아가는 방법, 권리 중심의 교육이 가능한가? ③ 장애는 신체, 정신적 손상이라는 비정상적 의료 개념을 뛰어넘는 교육이 가능한가?

보고서에서는 그동안 장애계를 중심으로 거론되었던 장애 인식개선 교육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이 대부분 담겼으며 나 역시 전적으로 동의한다. 다만, 현재의 장애 인식개선 교육은 설정 자체가 장애인을 대상화하고 비장애인을 주체화하고 있다는 한계를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 것인가, 또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기 위한 설명으로 비장애인과 같은 능력이 강점으로 강조되고 장애를 개성으로 이야기하면서 장애유형간 차별을 드러내기도 하는 등의 문제는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장애 인식개선 교육이 ‘장애’ 인식개선을 목적으로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규정하는 모순에서 벗어나 장애인의 삶, 장애인의 삶의 조건을 교육 안에서 인권을 바탕으로 어떻게 다룰 것인가가 남은 과제일 듯하다

토론 4

보건복지부 정책 반영 및 향후 대책

신용호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장)

보건복지부 정책 반영 및 향후 대책

신용호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장)

토론 5

한국장애인개발원 정책 반영 및 향후 대책

박지연 (한국장애인개발원 미래전략부 장애인식개선팀장)

한국장애인개발원 정책 반영 및 향후 대책

박지연 (한국장애인개발원 미래전략부 장애인식개선팀장)

1. 한국장애인개발원 장애 인식개선 교육 업무 추진 배경

- 보건복지부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해 장애인식개선 교육 실시 의무 대상기관을 확대하고, 교육 및 제출방법 등을 규정하고자 「장애인복지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동법 시행규칙 제2조의2를 개정(2016.6.30. 시행)
- (추진배경) 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교육인프라 구축은 미비
 - 교재개발, 강사양성이 이루어지지 않아 교육의 질 담보되지 않음
 - 실적보고 의무에도 불구하고 이메일 보고로 수기집계 되어 대외 자료제출 요구 증가에 대비한 신속·정확한 실적관리가 어려움
- (추진경과)
 - (2017. 3.) 계약직 인력(미래전략팀 배치) 채용 및 민원 대응
 - (2017. 9.) 실적관리시스템(<http://able-edu.or.kr>) 구축
 - (2018. 6.) 장애인복지법에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등 장애인복지 관련 교육, 홍보, 컨설팅의 사업 근거 마련

제29조의2(한국장애인개발원의 설립 등) ③ 개발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2.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등 장애인복지 관련 교육, 홍보, 컨설팅

- (2018. 12.) 장애인식개선팀 신설
- (2019.3.~12.) 보건복지부 장애 인식개선 교육지원 사업 및 정책홍보 사업 수탁 수행

〈2017~2019 장애 인식개선 교육 관련 보건복지부-한국장애인개발원 업무 수행 내용〉

핵심과제	2017년	2018년	2019년
(1)실적관리 시스템	• 2016년, 2017년 실적 분석 • 실적관리시스템 구축	• 전산시스템 기능개선	• 전산시스템 기능개선 • 이력관리사이트 구축
(2)교육 프로그램	• 영유아대상 교육 강의안 마련 공모전 주관	• 성인대상 교육 강의안 마련 공모전 • 성인대상 교육 사이버영상(1종) 제작 • 어린이집·유치원 교사용 강의시연 동영상(2종) 제작	• 유아대상 애니메이션 및 활용가이드 제작 • 우수콘텐츠 종합관리 • SNS콘텐츠 공모전 개최
(3)강사양성	• 장애 인식개선 교육 교재 개발 및 강사양성체계 마련 연구(정책연구실)		• 유관기관 간담회 개최 • 강사양성시범사업 운영
(4)정책지원	• 외부대응 업무지원	• 외부대응 업무지원 • 장애 인식개선 교육 중장기 로드맵 발전방안 연구 지원 (서울대학교)	• 외부대응 업무지원계속 • 정책홍보 (영상제작 및 대국민 대상 뉴미디어 플랫폼 운영) • 사업 모니터링단 운영 • 유관기관 업무협력(한국보육진흥원 등)

1-1. 실적입력시스템 기능개선 방향

- (추진방향) 단순 실적입력 시스템에서 사용자 중심의 교육 콘텐츠 게시 및 세부 통계 도출이 가능한 시스템으로 기능 강화
- (세부과제)

1) 보안 관련

☞ 사용자 보안설정 강화 및 비밀번호 찾기 기능 시 입력정보 추가 등 기관로그인에 대한 보안성 강화 보안 강화

2) 통계기능 강화

- 대국민 공시용 그래프 부정확하여 페이지 숨김 처리 중
- 입력 시 ‘자율기입식’ 문항이 많아 통계처리의 어려움
- 전체 인원 대비 교육참여율 통계 도출 어려움

☞ 실적입력 방식을 정교화하여 교육실적자료의 통계화

순번 1	1 회	
교육방법	집체 교육 2 ☐ 보건복지부 강사 교육 ☐ 외부강사 교육 ☐ 내부직원 전달교육 원격 교육 ☐ 보건복지부 이러닝센터 교육 3 ☐ 사이버 연수 ☐ 동영상 시청	주요 교육 프로그램 4 ☐ 장애체험 ☐ 인형극 ☐ 강의 ☐ 토론 ☐ 문화체험 ☐ 스포츠 ☐ 기타 직접입력
	자료출처 ☐ 교육강사, 기관 자체자료 ☐ 실적관리시스템 등록 자료 ☐ 그 외 : 직접입력	교육강사 강사이름 입력 강사 소속기관 입력
교육날짜 6	시작 달력선택 ~ 끝 달력선택	교육시간 분 단위 입력
교육내용	☐ 장애의 정의 ☐ 장애인의 인권과 관련된 법과 제도 ☐ 장애인의 행동특성 및 능력 ☐ 장애인과 의사소통 하는 방법 ☐ 장애인 보조기구 및 장애인 편의시설 ☐ 그 밖에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내용 (직접입력)	
7 금융 상품 판촉 홍보 등의 영업과 연계한 무료 교육 실시 여부 ☐ 예 / ☐ 아니오 금융 상품 판촉 홍보 등의 영업과 연계된 무료 교육의 경우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6조3항」으로 규정하는 교육내용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으니, 지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8 * 교육 증빙자료 : 수료증, 참석자 명부, 교육실시확인서 등 (문서파일 첨부기능 추가)		
취소하기		추가하기

<실적 입력 방식의 체계화 (안)>

3) 사용자 편의성 강화

- 상위 기관에서의 하위 기관 교육 이수 확인 어려움
- ☞ 상위기관에서 하위기관 교육 이수내용 확인 가능한 기능 신설
- 교육자료 찾기 어려운 사이트 웹 인터페이스
- ☞ 교육대상 클릭 시 ‘추천콘텐츠’ 확인 가능한 페이지 신설

4) 기타 기능

- ☞ 관리자기능 강화 (중복가입 기관, 기타유형 기관 가입 처리)
- ☞ 사용자 만족도 조사 기능으로 지원의 만족 수준 파악

2. 2020년 사업에 대한 한국장애인개발원 역할 고민

1) 법개정에 대한 지원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2019년 10월 원안 가결하여 미이행기관, 부실 실시 기관에 대한 사후관리 체계 마련으로 교육의 질을 제고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됨

○ 개정법안의 주요 내용

- 인식개선교육의 실시 결과에 대한 점검 근거 마련
- 부실기관에 대한 벌칙 관리자 특별교육 등
- 점검결과에 대한 언론 공표
- 해당 결과에 대한 평가에의 반영 요구 등

○ 이에 따라 2020년에는 부실기관에 대한 기준 마련, 사후관리체계 마련, 점검 방안 마련 등 법 개정에 따른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

2) 교육지침 마련 지원

- 연간 교육지침 마련 및 배포를 통해 교육 운영의 신속하고 유연한 관리 필요
- (교육내용) 장애를 기반으로 하지만 전 세대 연령에 교육을 한다는 것을 감안하면 ‘장애’가 아닌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 인간의 다양성, 동등한 사회구성원, 사회 통합 등 대한 의식을 가질 수 있는 방향의 내용 구성이 필요하다는 발제자의 의견에 동의함. 현재 법령에 장애 인식개선 교육으로 다루어야 하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어 교육지침을 통해 교육대상별 교육내용을 구체화하면 교육효과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최저기준 설정) 교육의 대상이 유아부터 성인이기 때문에 지침을 통해 기관 대상자별 연 1회, 회당 1시간 내외 실시를 권장하며 대상별 특성을 반영한 교육시간 제시 필요
 - * 예) 유아 20분 / 초등학생 40분/ 중학생 45분 / 고등학생 50분
- 그 외 다양한 정책적인 변화를 신속하게 반영하여 교육 지침을 제공한다면 교육 담당자의 혼선을 줄이면서 기관의 안정적인 교육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

3) 강사양성

- 2019 강사양성 1차 시범사업을 운영함. 금년도 사업결과를 바탕으로 차년도에는 다양한 교육대상에 특화된 강사 양성, 다양한 장애유형이 강사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 마련에 대해 검토 필요

4) 교육제도 홍보

- 엄밀히 보면 교육실적은 교육이행률이 아닌 교육실적 보고율이라고 볼 수 있음. 특히 읍면동의 교육 이행률과 주요 정부기관의 교육 실적이 저조한 것은 실상 교육을 하지 않았다고보다 교육 실적 보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음
- 시스템 구축 시부터 고민되었던 사항이 기관 교육담당자의 변경으로 인한 인수인계 문제. 실무적으로는 비밀번호 찾거나 관련 문의를 하기 위해 걸려오는 민원전

화부터 데이터상으로는 같은 기관에서 교육실적 보고가 되었다 안 되었다 하는 부분이 이로 인해 발생하는 것으로 추측함

- 아직 교육 시행 초기로 교육대상별 맞춤 제도 홍보 노력이 필요함. 특히 유사한 명칭의 교육(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권교육, 교육부 장애이해교육, 평생교육중사자 대상 장애인권교육, 고용부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등)으로 정확한 정보 제공이 이루어지지 않을 시 교육 대상기관의 피로도 증가 예상

3. 소결

주신 의견에 대해서는 대체로 공감하는 내용이었음. 다행히 금년도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장애인식개선 조직 신설과및 보건복지부 사업 수탁 등을 통해 사업 수행의 기반이 마련되었고 더불어 대외적인 환경도 사업 예산 확대, 법개정 등이 이루어지면서 2020년도에는 많은 점이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함.

장애 인식개선 교육의 원활한 교육지원 및 홍보 사업 등 내년도 사업운영에 있어 금일 연구진 및 발표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우리 사회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이라는 교육의 당초 법 취지를 달성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와 함께 발 맞추어 노력하겠음.

이 저작물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저작권을 전부 소유하지 아니한 저작물이므로 자유롭게 이용(무단 변경, 복제, 배포, 상업적인 용도 사용 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장애 인식개선 교육’ 모니터링 및 운영교재 개발연구 결과발표회

인 쇄 일	2019년 12월 9일
발 행 일	2019년 12월 9일
발 행 처	국가인권위원회
주 소	04551 서울시 중구 삼일대로 340 나라키움 저동빌딩 http://www.humanrights.go.kr
문의전화	인권교육기획과 02)2125-9851
F A X	02)2125-0917
E - m a i l	research@humanrights.go.kr
제 작	부건애드

ISBN : 978-89-6114-719-4 93330 비매품



‘장애 인식개선 교육’ 모니터링 및 운영교재 개발연구 결과발표회



04551 서울시 중구 삼일대로 340(저동1가) 나라키움 저동빌딩 정책교육국 인권교육기획과
Tel. (02)2125-9851 Fax. (02)2125-0917 www.humanrightsgo.kr

ISBN : 978-89-6114-719-4 93330 비매품